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

최성호〈한양사이버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1 공공디자인의 전제

3년 전부터 하나의 사회문화운동처럼 뜨겁게 달아 오른 공공디자인은 이제 그 용어적 정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넘어,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적 장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디자인은 본디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강한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지향적 조형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여 디자인의 공공성을 굳이 강조한 용어의 사용은 디자인의 사회적 측면을 보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 요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산업디자인 능력은 세계 상위권을 논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제조하는 상품들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노력해온 만큼 그 결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 또 우리의 일상 환경 전반은 이러한 국제적 수준과 달리 상당부분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부터라도 생활전반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이 이미 모두에게 봉사하는 디자인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여도 기업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실제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주체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제품생산이나 판매를 넘어 생활환경 전반의 개선과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에 대한 또 다른 분류가 아니라 하나의 이념이자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이 다루고 있는 공공이라는 용어의 다함축적 의미와 확장성은 그것이 기실 다루고자 하는 매우 명확한 실체적 범위를 흐리게 하는 모호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공공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참여 주체간의 합의라는 민주적 참여,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한 접근이라는 도식이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 과정적 절차의 민주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지향만이 아닌 디자인을 통한 실천과 도시공간에서의 실재적 구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형활동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점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의 많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논의에서 공공디자인 전개과정에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이 본디 조형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그야말로 사변적인 공공성 논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의 행태적 문제와 심리적 접근을 위한 형태와 색채, 재질의 3요소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데 집중한다. 피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두가 아름답게 느끼는, 또 미와 기능이 합일되고 경제성을 가져 공공

의 이익을 구현하는 그러한 구체적 조형활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디자인의 형태와 색채, 재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고, 그러한 자유로운 논의가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하는 모순은 우리 사회의 공공디자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과 달리 시행주체와 관리주체 등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참여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깊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과 실제로 디자인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디자인의 창의성은 절대적으로 다른 부분이며 디자인 수행은 어디까지나 디자이너의 몫이다. 공공디자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이 반드시 형태와 색채, 재질로 이루어지는 실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개념이나 이념의 합을 넘어 실체를 만드는 강력한 조형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계획의 방향이나 원칙에 대한 언급을 넘어 구체적이며 매우 디테일한 요소의 제어를 목표로 한다.

2. 공공디자인의 실제적 범위

공공디자인은 흔히 시행주체, 실행주체, 참여주체의 3자에 의해 작동한다. 공공디자인의 시행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실행주체는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나 대학연구소 등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의 건축이나 조경분야가 포함되며, 특성에 따라 공사실행과 관련하여 토목과 전기공사 분야가 관여되기도 한다. 아울러 참여주체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즉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물론 특수한 사례로 시행주체가 공기관이 아닌 사업으로 광고권 등을 매개로 디자인과 제작, 설치, 유

지관리 등에 관여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 공공디자인은 제도권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에 따른 결과와 지속적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체계 내에서 구현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개념과 영역설정이 모호하고 법률적 근거 또한 여러 법률과 개별적 하위법 혹은 시행령, 조례 등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된다. 또 내용 측면에서도 도시, 토목, 건축, 조경 등과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각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들 역시 그 어의의 다양성만큼 폭넓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이 실제 어떠한 것에 주목하고 어떠한 것을 다룰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루어야 할 범주를 결정해주는 동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의 관계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명칭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개 도시의 경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즉 건축은 공공 건축물인 경우의 예외만을 제외하면, 모두가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주체가 각자의 여건과 사업의지, 개발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된다. 그런데 도시는 개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개별의 총체적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건축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건축의 공공성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변건축과의 관계, 건축물의 군집으로 이루어지는 경관형성, 건축물의 색채 군(群)이 이루어내는 도시색채, 건축물에 부착되는 각종 옥외광고물 등이 모두 공공성 논의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건축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기본계획 등은 도시의 창의성을 억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나 유도사항, 방향지침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경관상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도 신도시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지구 등에서 여러 가지 유도와 규제의 역할을 하여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건축이 지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민간건축은 독자적 체계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도시의 총체적 조화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개별적 건축을 모두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되고, 건축의 색채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등과 같은 관계 중심적 요소와 건축 외적 요소들을 제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내의 공원이나 광장도 민간 건축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적인 공원이나 도시광장들은 명확한 영역성을 갖고 있어 다른 공간과의 연계성보다는 자체로 강한 독자적 컨셉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량, 육교, 지하차도와 같은 도시 특수구조물도 있다. 최근 특수구조물과 도시 전체의 연계성 및 조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떤 권역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요소로 쓰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요소보다는 차별성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 건축이나 공원, 도시광장을 벗어난 도시의 나머지 부분들이 공공디자인의 실제 취급영역으로 설정되기 쉬운 특성을 갖게 된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독자적 차별성보다는 전체와의 조화나 관계성이 우선 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의 유효한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이 다루는 구체적 범위의 성립과 실제적 사업영역은 바로 민간건축영역의 경계인 옥외광고물로부터, 민간건축과 맞닿은 공개공지와 그 경계를 넘어선 가로환경이 되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주요 범위가 가로환경으로 제한되기 쉽다. 따라서 이를 정리해보면 행정기관이 공적 관점에서 집중 관리해야

할 책무가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공공디자인의 이념적, 이론적 범주를 넘어 실제의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 범주가 수립되는 것이다. 건축 및 시설물의 집합적 색채를 공공성의 측면에서 관리해주는 ‘환경색채’, 건축 자체의 미관과 도시 전체의 시각적 질서를 위해 각종 조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옥외광고물’, 거리의 수직적 구조물로 보행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시설물’, 주간이 아닌 야간의 총체적 환경을 다루게 되는 ‘경관조명’, 그리고 가로환경에서 이들의 관계를 살피는 ‘공공공간’의 부분 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은 개인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 유지 보수하는 명확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흔히 공공디자인 사업 범주가 되기 쉽다. 여기에 덧붙여 가로환경의 각종 시각정보들 역시 주요한 사업범주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정리해보면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환경색채’, ‘경관조명’,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공공시각정보’ 등 크게 다섯 가지는 명확히 공공디자인의 영역인 동시에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물론 개별적인 공공건축, 공원이나 광장의 디자인, 특정 상징조형물디자인, 각종 서식디자인, 공공기관의 웹디자인 등 디자인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모든 공적 대상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며 사업범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의 실제적 접근에서 가장 많은 범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민간건축이 제외된, 즉 민간건축이 공공영역과 만나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배경

앞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적 이해에서 시행주체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공공디자인은 여러 법률과 연계되어 매우 복잡하고 또한 도시, 토목, 건축, 조경 등과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면 여러 법률과의 관계

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효과적이며 실효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2002년에 제정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과 2007년 제정된 '경관법' 등 관련 법률은 행정측면에서 발생하는 공공디자인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먼저 결론부터 언급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국토법 및 경관법과 달리 비법정계획이며 가장 하위의 계획이다. 즉,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경관법에 의한 경관기본계획, 경관상세계획은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며 상위개념을 다루고 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것은 국토법이나 경관법 하의 다른 계획들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법률의 태생적이며 구조적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조건과 개발방식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지구지정 등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 중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은 공공디자인과 매우 밀접한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개발행위를 합리적으로 유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발생의 억제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1980년 도입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에 기존 도시지역에 적용되어 오던 지구단위계획을 1종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 최근의 수도권 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환경친화요소의 활용과 경관계획적 접근이 강화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정

된 구역 내의 수많은 개발관련 요소들을 규정하게 되므로,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인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환경색채, 경관조명, 옥외광고물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달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다소 다른 취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경관법'은 2007년 11월 지자체별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경관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경관법의 주요골격은 경관계획의 자율적 수립을 전제하였고 위계별 수립계획이 아닌 유연한 적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법상 체계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법상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토록 하고 있다. 경관계획의 특징을 보면 첫째,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선택적이며 중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 둘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 경관계획 내용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계획 셋째,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 수준의 경관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 수준까지 다양한 위계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도시 나아가 국토의 환경 질 관리는 대단히 체계적인 단계로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이라고 굳이 별도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구단위계획 속의 상세계획이나 경관상세계획만 잘 수행하고 옥외광고 조례 등만 잘 조정하면 도시의 시각적 질은 담보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관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행정 제도가 흔히 놓치기 쉬운 '디테일의 관리'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이다. 즉, 경관법에 의거한 대개의 경관계획은 그것이

경관기본계획이든 경관상세계획이든 본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의 법 체계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선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다. 또 법을 고치려 해도 수없이 다른 경우의 수를 모두 가정하여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든다 하더라도 디자인 요소 제어 구현까지의 구체성 확보는 요원하다. 또 대체로 부족한 예산 내에서 사업희망 구역 내의 여러 경관관련 항목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다 보면, 대개 요점 중심이 되기 쉽고 디테일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행정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경관계획은 디테일을 포함한 훌륭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다. 거시적 관점으로부터 미시적 관점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좋은 계획은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이러한 작업에 여러 종류의 경험 있는 팀이 동시에 투여되어야 한다. 즉, 도시계획을 이해하는 팀과 공공공간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는 공공시설물 팀, 옥외광고물이나 환경색채, 경관조명 등을 다루는 팀 등 여러 팀이 필요한 작업이란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들을 모두 묶어 조율할 수 있는 여러 조정 메커니즘을 사전에 구성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경관계획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세부분을 다루는 가장 하위의 실행 가이드이다. 따라서 그 언급의 내용은 매우 구체화된 수치이거나 형상의 방향을 적시하는 경향을 띠기 쉽다. 하나의 예로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하나의 지구단위가 가져야 할 수없이 많은 요인을 다루게 된다. 지구가 가져야 할 특성, 컨셉, 도로와 보도의 형식, 건축의 구성과 유도사항, 규제, 범죄 예방설계, 식재,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경관조명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록해야만 한다. 이러한 계획에서 사실상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디테일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결국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대단

히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기술되거나, 깊은 분석과 성찰을 거치지 않은 모호한 특성화 방향이 제시되기 쉽다. 또 잘 기술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발의 개요와 방향을 잘 정리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시설물이나 색채의 적용방법, 경관조명의 상세한 컨트롤 수법 등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처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 영역과 범위, 취급하고자 하는 깊이에 대한 수많은 논란을 떠나 총체적 환경 질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면위로 떠 오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해결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충칭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놓치고 있던 디테일을 개선하고자 하는 총체적 태도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테일을 국토법이나 경관법에 모두 담을 수는 없으므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자체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기본계획의 항목에 '세부내용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기술하여 경관법과의 연계성을 통해 행정적 절차의 당위와 효과적 집행을 가능케 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며, 법정 계획으로 다루어져야만 실제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기틀이 공고해질 것이다.

결국 경관법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또 다른 국가 R&D예산에 의한 별정사업이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되어 논의되거나 그것들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환경의 총체적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현실적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상위계획들이 다루기 힘든 도시의 세부 디테일들을 다루는 것, 그것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며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기본품질 확보'와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유형

국내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효시는 서울시이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비법정계획이지만 도시의 총체적 기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크게 다섯 가지 체계로 접근하였다. 이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공공건축만을 제외하면 모두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는 초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이 지향하는 바가 행정체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경관법에 의해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경관위원회를 서울디자인위원회가 겸하도록 하고 그 심의기준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적인 디테일을 심의하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해외의 사례로 런던시가 '런던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 Greater London)¹⁾'에서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공부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거리, 근린, 지역(구), 스카이라인·특정조망·가로경관, 광장 및 보행로, 스트리트퍼니처, 횡단보도, 산책로, 공원과 정원, 주요건물, 공공건물, 강과 운하, 지하철과 기차역, 교통시스템과 교차로 등의 14가지 항목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공공건축과 공공공간, 가로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가지는 직간접적으로 거리와 연관되어 있다. 즉, 런던시 역시 좋은 도시디자인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 상당부분은

'거리디자인'인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관법에 의하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든, 또 다른 접근에 의하든 공공디자인의 본질이 민간건축의 경계를 넘어선 거리와 주로 관계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가이드라인의 본래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대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변수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태도이다. 또 그것은 실행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구호나 주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를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의 대분류에서 경관조명은 제외되어 있으며, 필자가 연구를 진행했던 여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등에서는 경관조명을 배제하여 대분류를 하였으나,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과 도시별 설계지침 등에서는 경관조명을 포함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지자체 또는 사업의 성격에서 경관법이나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잘 보여준다. 즉 경관법 하에서 야간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기본경관계획에서 야간경관계획을 공공디자인과 분리하여 수립토록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대분류에서 경관조명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구단위계획의 결과가 디테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야간경관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의 야간경관질 확보를 위해서는 경관조명에 대한 기준수립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경관조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분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관상세계획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루고자 하는 디테일을 다루도록 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관법에 기초

1) '런던을 위한 디자인'은 2001년 영국건축가협회와 당시 런던시장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자문 책임 건축가였던 리처드 로저스가 주도하였다.

한 경관상세계획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비법정계획보다 명칭상 예산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경관상세계획 수립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디테일한 기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언어의 뉘앙스가 본래부터 특정한 영역, 즉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리적 관점에서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관상세계획을 통해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얻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경관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다루지 못하는 디테일을 연구하고 이를 명기하여 행정체계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도시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즉 경관상세계획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체계를 취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건축의 경계를 넘어선 바로 그 지점 즉, 가로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물리적 고정성과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술방식은 대개 '정성적', '정량적' 가이드라인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유도지향적', '규제지향적' 가이드라인의 축으로도 나눌 수 있다. '정성적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을 지향한다" 또는 "～은 가급적 지양한다"라고 하여 방향을 언급하는 구조가 중심인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은 대개 사례이미지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대조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는 대체로 지양하는 것들만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도 정성적 가이드라인의 보편적 방법이다. 이에 반해 '정량적 가이드라인'은 해당 항목의 기술적 요목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규격의 범위, 재료의 종류, 구현방식 등을 구체적

인 수치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정성적 가이드라인'은 정량적 차원의 범위 외에 있는 문제들, 즉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적 차원과 같은 측면을 포괄하면서, 특정한 도시 또는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과 결부되는 형태, 색채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정성적'일 것인지 '정량적'일 것인지의 지향성과 '규제' 중심으로 또는 '유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인지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존도시, 즉 도시가 비대해지고 환경 질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축적해 온 도시의 경우 일시에 많은 부분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존도시의 경우 대체로 정성적인 방식의 기술태도를 취하기 쉽다. 이에 반해 흔히 우리가 신도시로 부르는 도시들은 명확한 계획 하에 공급자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다 정량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규율하고,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일반적인 방식이다. 규제와 유도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도시는 다분히 규제중심의 가이드라인 성향을 띠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대된 도시를 비우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는 총량 규제가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향후에 도시의 콘텐츠가 쌓이고 확산될 것이므로, 긍정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나의 예로 런던의 거리와 관련된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영국 헤리티지 재단(English Heritage)이 발간한 '모두를 위한 거리(Streets for All)' 가이드라인은 지면(Ground surfaces),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 새로운 설치물(New equipment), 교통 정온화 장치(Traffic calming and management), 환경향상(Environmental improvements)의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각각

의 검토대상에 대해 위치나 크기, 형태, 색채, 설치방식과 관리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되, 규제하는 사항과 권장하는 사항을 동시에 대별하여 보여줌으로써 글이 가지는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고 있다. 즉, 글이 가지는 유권해석의 여지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도해 등의 이미지로 보완함으로써 “~을 권장 한다”라고 하는 정성적 방향을 정량화에 가까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구성적 측면에 있어서는 공간적 관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거리를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건축과 여러 가로 시설들과의 복잡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에서의 배치와 위치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즉, 지면으로부터 그 위에 놓이는 공공시설물, 새롭게 추가되는 각종 요소의 제어방식 순으로 설정하여 거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요항목들을 언급한 후, 교통관련 사인 및 공공미술, 수목, 건물의 조명들과 같은 항목을 언급해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교체가 보다 용이한 차원으로 구성체계를 정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어떠한 특정 도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체계는 그 도시의 특성과 행정체계의 수행조직 및 그 도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정비방향 등과 매우 밀접하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먼저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유형은 가이드라인 전체의 구성 측면에서도, 세목별 제시방법에 있어서도, 또 개별단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거리 디자인’을 위한 요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요소들을 정량적, 정성적 방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어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다. 대개 우리 도시들은 대체로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행정집행이 쉽기 때문에 대체로 정량적 성향을 띠기 쉬운데, 특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처럼 구체적인 규격과 설치위치, 표기내용까지도 규제를 가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획일화’라는 한계에 부딪치기 쉽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 설정에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잘 이해하여 조례와 같은 법체계로 관리해야만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 기준을 상당부분 부여한 후, 기준 부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결국 정량적, 정성적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동시에 혼용하는 형태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의 조명계획 분야는 포함될 수도 때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의 설정여부는 상위계획인 국토법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법의 경관계획에서 얼마나 상세히 다루었는가와 밀접하다. 상위계획에서 충분히 디테일을 다루어서 실행체계로서 문제가 없다면 경관조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위계획에서는 빛과 관련된 야간경관의 정책추진 방향과 원칙만이 언급되기 쉬우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상이나 야간경관 연출유도 대상 등을 지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보완책으로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한 영역으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기존 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관법에 따라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건설 후 관리를 담당하게 될 명확한 지자체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만이 유일한 야간경관 제어수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조명 관련 언급으로는 거대 신도시의 세부적인 경관조명 계획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신도시 건설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한 영역으로서의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관조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도시의 야간경관 추진방향은 대개 일정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바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데 그 첫째는 공공성의 중시이다. 구체적으로 사적 조명보다는 공적조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랜드마크와 문화재를 우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와 건축물의 맥락에 맞는 조명을 유도함으로써 무모한 밝기의 경쟁을 지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양적 조명보다는 질적 조명을 지향하는 것이다. 가급적 도시공간에서 조명의 수량은 줄이되 효율은 높여 거리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연색성이 좋은 조명을 확대하고 가급적 자연스러운 빛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조명을 통한 도시안전의 확보이다. 범죄나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빛의 계획은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제어방법이다. 각종 보행로와 공원의 조명등 설치 및 이의 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의 문제와 주변환경이나 시간 및 계절과의 관계성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넷째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조명도시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조명방식과 기구의 사용, 시간대별 조명의 제어, 필요부분에만 빛을 보내는 적정한 배광의 선택, 새로운 조명 신기술의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조명문화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빛 축제,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명 연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대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보다는 상위체계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도시 전체의 야간경관을 크게 인프라정비, 특화계획, 활성화계획 등의 측면에서 다룬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경관조명 시설 개선과 정비, 광공해 규제책의 마련,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수립과 같은 인프라정비에서 다루어지는 세부계획이다. 즉 스카이라인이나 랜드마크, 파노라마 조명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개별 특화계획이나 빛 축제의 구체적 방법 제안, 야경관광프로그램 구축과 같은 활성화 계획 등은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범주와는 별개의 단위사업 또는 그러한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조화와 제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세부계획이며, 특히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발광광고물 등에 의해 무질서해진 야간경관 회복을 위해 빛의 레벨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유도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디테일 계획으로서의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특정한 범위의 지구 또는 지자체 단위의 도시를 기준으로 총체적 측면에서 빛의 분포도에 따라 몇 개의 레벨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대개의 경우 도심지역에서는 역동적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빛의 레벨을 중시한 가이드라인이, 부도심지역에서는 고층빌딩 밀집 지역이나 부도심 중심가로에서 연출할 수 있는 입체적인 빛의 효과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일반지역에서는 도로와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및 지하철 지상구조물과 같은 특수구조물이 강조되면서도 깨끗하고 부드러운 빛이 강조되어야 한다. 외곽지역 또는 생활권역에서는 대체로 빛을 통한 안전성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도시 내 또는 외곽의 하천이나 강, 산 등의 자연경관 지역의 연출에서는 산재되는 어두운 빛의 연출을 지향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6.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의 범위와 내용

일반적인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의 대상범위는 다음

의 다섯 가지 정도이다. 도로조명에 대한 기준, 건축물 조명에 대한 표면휘도 기준, 도시 특수구조물에 대한 조명기준, 문화재 조명기준, 개방공간에 대한 조명기준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제조명위원회(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및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제조명위원회의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 기준(CIE 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i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에 따르면 빛의 밝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국립공원처럼 어두운 경관의 지역은 E1으로 건물표현 휘도를 $5[\text{cd}/\text{m}^2]$ 이하로 하고 광고물 표면의 휘도수치는 $50[\text{cd}/\text{m}^2]$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시권 외 전원주택지역인 E2는 건물표면 5이하, 광고물 표면 400이며 도시주거지역인 E3는 중간정도의 휘도분포지역으로 건물표면 15이하, 광고물표면 8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가장 높은 휘도분포지역인 E4는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건물표면 25이하, 광고물표면 1,0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작성시 전반적으로 빛의 밝기가 높은 빛 환경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히 E4 지역의 광고물표면 수치를 $2,000[\text{cd}/\text{m}^2]$ 정도로 반드시 상향조정해야만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와 유도라는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축물의 휘도비율이란 경관조명시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대비를 의미한다. 특히 부분적으로 강조된 조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양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도시의 총합적인 빛의 레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색상이나 밝기 변화 또는 반복 점멸을 통한 빛의 현란한 움직임도 도시환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제어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대개 국내에서의 적정한 휘도비율은 업무지구에서 1:5 이내, 중심상

업지구에서 1:5~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주거지구에서 1:3정도 이내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권장되는 수치이다.

도로조명에 대한 기준은 대개 노면휘도와 색온도, 조명방식, 가로등 높이, 가로등 간격, 구현하고자 하는 야간경관의 정성적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기준에서 본다면 간선도로는 대개 약 4,000[K] 이상의 색온도에 노면휘도는 1.5~2.0정도에 가로등 높이는 12[m]이하, 가로등의 간격은 30~35[m]정도이다. 이에 비해 집산도로의 단계로 내려오면 색온도와 노면휘도는 비슷하지만 가로등 높이도 대개 10[m]이하에 간격도 20~30[m]정도로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의 단계에서는 노면휘도도 0.5~1.0정도, 색온도도 3,000~3,500 [K]정도, 가로등높이는 약 6[m]내외에서 간격도 약 15~20[m] 정도로 도로의 폭에 따라 정량적 수치가 변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다른 영역처럼 정량적 기준제시와 정성적 기준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신도시개발의 하나인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경관조명 부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정량적 기준으로는 간선도로조명은 노면휘도 1.5~2.0, 색온도는 4,000~4,500[K]의 범위를 주었고, 조명방식은 Cut-off, 가로등 높이는 12[m]이하, 가로등 간격 30~40[m], 광원은 메탈 할라이드 또는 세라믹메탈할라이드 계열의 연색성 Ra70이상으로 정량값을 제공하여 최근 연구되어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인 간선도로 기준을 준용하되, 동시에 정성적 기준으로 상업지역을 지나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을 명료하게 빛으로 강조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또 건축물의 조명에서도 정량적 기준인 표면휘도와 휘도비율값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성적 기준으로 상층부 혹은 중층부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조명은 지양토록 하고 빌딩 내부의 조명을 경관조명 연출요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결국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도시 전체의 조화를 한 눈에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도로조명과 공동주택의 경관조명, 건축물 조명 등을 통해 최대한 빛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먼저 조도의 기초만들기와 강조점 만들기에 대한 기준이 적절히 세워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와 유도의 방법이 작성되어야 한다.

7.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의 방향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기존도시가 아닌 신도시 건설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한 영역으로서 기능할 때 보다 유효한 수단이다. 또는 서울시의 야간경관계획처럼 틀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을 제시하되, 부제로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여 경관법을 활용하되, 실용적이고 유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야간경관계획을 살펴보면, 야간경관의 방향과 정책을 넘어 밝기기준과 용도지역 및 도로기준을 대입한 새로운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한 영역으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든 야간경관계획의 틀 내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을 취하든, 모든 계획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 많은 가이드라인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수반해야만 가능하다.

도시, 건축,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는 몇몇 전문가나 특정한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가 위계에 따른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체적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각자의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조율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이 담당하는 도시적 맥락의 이해와 규제사항들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리

고 그러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도시차원의 컨셉은 도시의 건축 부문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할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경관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공공시설물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경관조명, 식재 등 도시로부터 건축에 이르는 맥락이 가로환경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관계구축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천적 단계에서 도시계획과 건축, 가로환경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읽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각각의 요소에 대응시켜 형태와 색채, 소재, 공간에서의 관계 방식, 제작 및 설치 유의점, 유지관리 방안 등으로 정밀화하여 디테일을 구현해야 한다. 모든 일은 일을 위한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수많은 공공디자인의 범주를 도시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체계이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우리 도시의 환경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현실적이며 빠른 제어수단이다.

따라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종합적 관계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맥락을 동시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의 맥락에 따른 조닝과 각 조닝에 대한 레벨의 설정, 건축물과의 관계, 기타 공공시설물과의 관계, 식재 등과의 조율, 환경색채와의 종합적 관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 설정작업이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도시의 경우 경관조명의 휘도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의 상당부분을 보행등이 아닌 옥외광고물의 빛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옥외광고물 영역에서 간판의 종류로 조각문자형이 중심상업지역의 가이드로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 경우 지양되고 있는 판류형 간판이 때로는 선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판의 설정과 설정 관계가 경관조명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범죄예방설계(CPTED)의 측면에서 버스쉘터가 위치한 영역의 밝기 및 색채, 적정거리에 대한 논점처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도시의 맥락에 따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각 영역은 서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역시 전체를 위한 부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혁신도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연출이미지

현재 우리의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빛 자체를 언급하는데도 많은 페이지를 기술해야 한다. 그만큼 우리 도시의 빛 환경이 열악하며 기초적 제어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현재의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도시의 품격을 논의하기 위한 보다 높은 제어수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건축물 상층부의 최대晦도 대비라든가 각 지역별 건축물 조명디자인의 세부지침 제공이라든가 특수구조물에 대한 밀도 있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보다 심도 깊은 가이드로 나아갈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본질은 디테일이며, 그러한 디테일의 총합이 도시를 안정화된 품격의 도시로 이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Streets for All, English Heritage, London, 2000.
- (2) 김영환,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변천과 역할, 국토 통권 313호, 2007.11.
- (3) 김정후,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국토 통권 320호, 2008.6.
- (4) 장순재,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국토 통권 313호, 2007.11.
- (5) 최성호, 도시 공공디자인을 위한 체계적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3, No.4, 2007.
- (6)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공공디자인강좌, 가인디자인랩, 2009.
- (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 (8) 동남권유통단지, SH공사, 가든파이브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메카디자인, 2008.
- (9) 정도균 외, 광교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주)CL Associates, 2009.2.
- (10) 우영희·최성호 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충주대 학교-(주)CL Associates컨소시엄, 2009.8.
- (11) 최성호 외,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주)CL Associates, 2009.9.
- (12) 최성호 외,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한국디자인진흥원-(주)CL Associates컨소시엄, 2009.10.

◇ 저 자 소 개 ◇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콘텐츠개발센터장.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부회장. 서울시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 하남미사신도시 신도시계획 총괄 MP (디자인분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기본·실시설계 디자인디렉터.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총괄연구원. 충청북도,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총괄연구원. 서울시 지하철환경개선사업 동대문운동장역 디자인 및 시공 MP. 서울시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 MP.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사업 지명디자이너.